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70762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청구]

전 문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찬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의 ‘이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입회계약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콘도미니엄업, 관광레저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경남 창원군 C에 위치한 D이라는 명칭의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세 곳의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2) B와, 원고 순번 1에서 35, 37에서 41, 43에서 56번 각 원고들은 기간을 별지 2 표 중 '입회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만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로, 입회보증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정하여, 원고 순번 36, 42, 57번 각 원고들은 입회보증금을 별지 3 표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 위 입회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는 '입회금의 반환은 입회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반환 신청, 계약해지 요구가 없을 경우 위 입회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또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 입회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와 같은 취지의 계약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리조트의 매각 및 B의 파산

1) B 소유의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조합는 2017년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9.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창녕군수는 2019. 9. 24.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3) B는 2021. 8. 25. 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43호).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¹⁾은 아래와 같다.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9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상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리조트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포함한 B의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B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상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리조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리조트 및 기타 제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B의 관광사업시설 중 이 사건 리조트만 인수하였고 나머지 두 리조트 및 골프장은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의 콘도미니엄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만을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는 골프장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
- 3)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어 관광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인수인은 그 관광사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G, H, I,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는 위 개정법의 시행일인 2002. 4. 27. 전에 B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골프장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5) 이 사건 각 입회계약 중 골프장 이용 부분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사업자 지위와 무관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승계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B 승계 여부

1) 관련 법리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관광사업자(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구 법 제2조 제4호)”로서 구 법 제19조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관광사업자가 구 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라도 관광사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모집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구 법 제8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5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관광사업자인 B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각 입회계약에서 정한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임의경매절차에서 B 소유의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및 건물을 모두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3, 4, 14, 1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제휴 골프장에 대한 주중회원대우 등의 조건을 부가한 이용특약을 통해 체육시설인 골프장 회원의 자격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종류로는 ‘비즈니스 플러스’(갑 제41호증의 1 등, 단, 명칭은 ‘비즈니스’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이 ‘비즈니스’ 계약의 보증금보다 높은 1억 5,000만 원이고, 이용특약에 ‘비즈니스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 ‘비즈니스’(갑 제17호증의 1 등), ‘플래티늄’(갑 제3호증의 1 등), ‘프리미엄’(갑 제24호증의 1 등), ‘골프텔’(갑 제40호증의 1 등)이 있다.

② 위 각 종류에 따라 보증금이 다르고, 별도의 이용특약이 존재하는데, 위 각 이용특약에는 회원혜택으로 M 등과 같은 제휴 골프장의 주중회원대우 등(위 각 종류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는 횟수 등의 혜택이 다르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위 각 입회계약 종류별 이용특약은 아래와 같다.

비즈니스 플러스

제2조 비즈니스 플러스(1.5억 원) 회원혜택

■ M, N

-정회원1 + 동반인3

-주중 월 4회 부킹 보장(월 4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2회 부킹 보장(토1, 일1/ 월 2회 범위 내 위임 가능)

<1팀 기준요금> 생략

■ O

<1팀 기준요금> 생략

-주중 월 4회(월 4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2회(월 2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2회 부킹 보장(토1, 일1)

비즈니스

제2조 비즈니스(1억 원) 회원혜택

■ M, N

-정회원1 + 동반인3

-주중 월 3회 부킹 보장(월 3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1회 부킹 보장(월 1회 범위 내 위임 가능)

<1팀 기준요금> 생략

■ O

<1팀 기준요금> 생략

-주중 월 3회(월 3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1회 부킹 보장(월 1회 범위 내 위임 가능)

플래티늄

제2조 플래티늄 골프리조트 회원혜택

- M 주중회원 혜택: 토요일/휴일, 공휴일 잔여타임 부킹 가능, 일요일 할인(월4회)
- P 정회원 혜택(주중/주말 부킹권 부여)
- O 주중회원 혜택(주중/주말 부킹권 부여)
- Q 주중회원 혜택(주중 부킹권 부여)
- N 주중회원 혜택(주중 부킹권 부여)
- R 완공시 주중회원 혜택
- 가족회원 1인 등재
- 해외 제휴 골프&리조트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프리미엄

제3조 프리미엄 골프리조트 회원혜택

- ① M 주중회원대우: 주중 월4회 주중회원대우, 토요일 10시 이전 부킹가능
- ② S 정회원 대우
- ③ T 준회원 대우
- ④ O 준회원 대우
- ⑤ N 준회원 대우
- ⑥ 해외 제휴 골프 리조트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 ⑦ 전국 U 골프텔 정회원 대우

골프텔

M 주중회원 대우(주1회)

P 코스 정회원 대우

V 정회원 대우

W 회원 대우

일본 X 회원 대우

호주 네 곳 CC 그린피 무료(5년간)

③이렇듯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제휴 골프장의 준회원, 정회원, 주중회원 등과 같은 회원 대우를 포함하고 있다. B는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다른 혜택을 정하여 놓고, 이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④만약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오로지 관광숙박시설인 이 사건 리조트 또는 B의 다른 리조트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라 리조트의 예약가능 일수, 사용 가능 리조트의 범위 등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른 리조트 이용 범위가 다르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용특약에 의하면 골프장 이용 범위, 주중 및 주말 이용 가능 일수 등이 다를 뿐이다.

⑤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 대우 혜택을 위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들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우선권만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굳이 더 비싼 입회보증금을 내고 비즈니스 플러스와 같은 고가 종류의 입회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⑥B의 전 대표이사였던 Y, Z 및 B는 2021. 11. 23. 관광숙박시설인 B의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 제휴 골프장에 대한 주중회원대우 등의 조건을 부가한 골프리조트 이용특약을 통해 체육시설인 골프장 회원의 자격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10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모집행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체결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이는 구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와 그 내용이 같다)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설령 B와 회원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입회계약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승계하였을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승계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2) 원고 순번 36, 42, 57번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갑 제38, 44,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순번 36, 42, 57번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전에 B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와 똑같은 내용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B에 대한 위와 같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은 모두 기판력을 가지고, 위 기판력은 결정의 확정일 이후 또는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B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에게도 미치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의하면 위 각 계약의 만료로부터 소정의 기간(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 전까지 입회보증금의 반환 청구 또는 입회계약 해지 요구 등을 하지 않으면, 위 각 입회계약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기간 만료,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 등의 사유로 위 각 입회계약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각 원고들별로 위 각 입회계약의 만료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거나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으로 위 각 입회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B의 파산절차에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자료(서울회생법원 2019하합43호에 관한 사건검색)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증거자료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보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8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원고별로 언제 위 각 입회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계약연장 거부를 하여 더 이상 입회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심지어 위 참고자료는 증거로 조사되지도 않았다).

다) 나아가 위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나머지 원고들의 채권신고일은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의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2019. 9. 무렵 이후인 2021. 9. 27.인데, 그때는 이미 B가 위 각 입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 참고자료로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거나 위 각 입회계약의 연장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입회계약의 당사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라) 결국 위 나머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정신영, 판사 한광수

별지 1

원고 목록

1. AA
2. AB
3. AC
4. AD
5. AE
6. AF
7. G
8. AG
9. AH
10. H
11. I
12. J
13. AI
14. AJ
15. AK
16. AL
17. AM
18. AN

이하 별지 생략(순번 19~57)

별지 2

표

원고 순번	원고	입회일	만기일	청구금액
1	<삭제 처리>	2009.11.16.	2029.11.16.	45,000,000
2		2010.01.28.	2020.01.28.	41,400,000
3		2010.08.02.	2015.08.02.	41,400,000
4		2009.07.26.	2029.07.26.	45,000,000
5		2009.09.28.	2029.09.28.	45,000,000
6		2011.09.27.	2021.09.27.	41,400,000
7		2000.12.05.	2013.05.21.	35,820,000
8		2007.12.13.	2017.12.13.	54,000,000
9		2010.03.03.	2015.03.03.	41,400,000
10		2000.11.17.	2017.12.29.	33,830,000
11		2000.12.09.	2018.04.09.	35,820,000
12		2000.11.04.	2017.11.04.	35,820,000
13		2009.11.06.	2014.11.06.	41,400,000
14		2009.12.04.	2029.12.04.	45,000,000
15		2012.07.02.	2017.07.02.	63,000,000
16		2015.06.22.	2035.06.22.	45,000,000
17		2011.05.13.	2021.05.13.	41,400,000
18		2018.11.15.	2028.11.15.	100,000,000
19		2008.10.02.	2018.10.02.	31,840,000
20		2015.03.26.	2025.03.26.	100,000,000
21		2010.11.15.	2020.11.14.	41,400,000
22		2007.07.30.	2017.07.30.	54,000,000
23		2009.12.11.	2029.12.11.	45,000,000
24		2011.05.12.	2021.05.12.	45,000,000
25		2009.07.14.	2019.07.14.	41,400,000
26		2009.11.12.	2019.11.12.	41,400,000
27		2009.09.25.	2029.09.25.	45,000,000

28	<삭제 처리>	2014.09.12.	2034.09.12.	45,000,000
29		2007.08.24.	2017.08.24.	54,000,000
30		2009.07.14.	2029.07.14.	45,000,000
31		2012.02.21.	2022.02.21.	126,000,000
32		2009.06.19.	2029.06.19.	45,000,000
33		2007.08.23.	2017.08.23.	54,000,000
34		2009.12.30.	2019.12.30.	45,000,000
35		2007.09.06.	2017.09.06.	54,000,000
37		2009.08.27.	2019.08.27.	41,400,000
38		2007.03.05.	2017.03.05.	54,000,000
39		2017.07.18.	2027.07.18.	150,000,000
40		2012.03.23.	2022.03.22.	126,000,000
41		2001.03.03.	2011.03.03.	27,860,000
43		2016.07.22.	2026.07.22.	150,000,000
44		2017.10.30.	2027.10.30.	150,000,000
45		2016.09.26.	2026.09.26.	150,000,000
46		2009.07.24.	2029.07.24.	45,000,000
47		2012.08.23.	2022.08.23.	45,000,000
48		2015.05.14.	2025.05.14.	70,000,000
49		2000.10.19.	2010.10.25.	35,820,000
50		2010.08.16.	2030.08.16.	45,000,000
51		2010.01.26.	2020.01.26.	41,400,000
52		2016.04.21.	2026.04.21.	150,000,000
53		2017.09.27.	2027.09.27.	150,000,000
54		2017.04.20.	2022.04.19.	150,000,000
55		2016.11.22.	2026.11.22.	100,000,000
56		2005.07.22.	2010.07.22.	126,000,000

끝.

별지 3

표

원고 순번	원고	청구권원	원금	지연손해기간	이율	지연손해금	청구금액(원금 +지연손해금)
36	AO	2018.06.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5133호 판결	54,000,000	2017.08.16.~ 2021.10.29.	연 6%	13,625,753	67,625,753
42	주식회사 AP	2017.05.23.자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9240호 판결	54,000,000	2016.11.11~ 2017.02.13.	연 5%	702,739	92,828,218
				2017.02.14.~ 2021.10.29.	연 15%	38,125,479	
57	주식회사 AQ	2018.06.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71100호 결정	54,000,000	2018.09.01.~ 2021.10.29.	연 15%	25,609,315	79,609,315

끝.

1)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사이에 관광진흥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제20조는 그 사이에 그 조문 위치나 문구의 변경만 있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었고, 제8조는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된 것)부터 그 조문 위치나 문구의 변경만 있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었다.